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1995년 3월 16일

나. 회부일자 : 1995년 3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과 업무추진의 일원화로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높이고 행정추진을 간소화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.

4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시군정원, 직렬, 기능조정권한 삭제
- 수산자원보전지구내 행위제한 위반사실조사 및 위반자 조치
-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 계획 인가
- 재개발사업시행자 지정 신청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을 검토한바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도와 시·군간에 있어 행정사무의 기능을 재분배하고 권한의 합리적 배분으로 행정추진의 간소화와 능률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

주요내용으로는

- 지방과소관 사무중 시·군의 정원조정, 이관, 직렬조정, 기능조정 등의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고 이에관련한 일련번호를 조정하려는 것이며
 - 축산과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수산자원 보전지구에 관한 권한으로 수산자원 보전지구관리, 보전지구내 행위제한, 오염원 및 환경오염도 조사, 보전사업 실시 등에 관한 소관사무를 신설하려는 것이며
 - 도시개발과소관 사무에 있어서는 토지구획 정리사업에 따른 환지계획인가, 부담금 및 보조금의 집행잔액 사용인가, 재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신청 및 지도감독 등의 소관사무를 신설코자 하는 내용으로써
-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추진의 간소화 및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자치단체의 능률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서 승인하여 준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6. 첨 부

-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(안)